

東草市綜合競技場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1994. 12. 28.

산 업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년 11월 28일 속초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11월 28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
('94. 12. 22) 상정,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: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)

가. 제안이유

- 속초시 종합경기장이 시민의 체육활성 도모와 체육공간 제공으로 하여금 스포츠 붐을 조성하고 중앙경기 단체의 훈련장으로 제공하여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육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속초시 종합경기장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사용료 조정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- 제16조 (입장권 등) 제5항의 "예매 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"의 조항은 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기타 각종시설 사용료 및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기존 실시하고 있는 타시와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4. 質疑 및 答辯要旨 (답변자 :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제12조 각호의 1에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사 도중 연장할 수 없을때, 사용자의 손해보상 청구시 대책은?	○ 계약시 손해보상 요구할 수 없도록 규칙의 허가사항에 삽입할 것임.
○ 제14조 제4항의 '손해배상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'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란?	○ 육상 기구등 시설물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가격표를 준용하고 그외 기타 시설물은 견적에 의하여 처리할 것임.
○ 제16조 제5항 '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결정한다'라고 재량권을 부여한 이유는?	○ 사용자의 판매수익이 적을시를 대비한 재량 사항임.
○ 사용료 납부방법은 ?	○ 사용당일 사용료 전액을 납부토록 규칙에 명시할 계획임.
○ 제19조의 2(구성) 제1항 '위원회의 위원은 부위원장 각 1인'의 의미는?	○ 문맥상 참으로 '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'으로 수정해야 할 것임.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위원의 수당지급 필연성은?	○ 제19조의2 제3항에 '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자를 위촉'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은 봉사자로서 수당지급 규정은 없음
○ 위원회 구성원에 '간사' 포함을 명문 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?	○ 필요하다고 사료됨.

5. 討論 要旨 : 없 음

6. 修正案 要旨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년 12월 22일 산업위원회 위원장

나. 수정이유 : 문맥오류 및 위원회 필수구성원 누락으로 일부
자구수정

다. 수정 주요골자

· 제19조의 2(구성)

- 제1항 "위원회의 위원은"을 "위원회는 위원장과" 로 하고
- 제3항 "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"를 "시장이 임명 또는
위촉하고 간사는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" 로
자구 수정

7. 審査結果 : 수정안 가결

8. 少數意見의 要旨 : 없 음

9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

첨 부 :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1부. 끝.

東草市綜合競技場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案에對한修正案

1994. 12. 22.

산 업 위 원 회

1. 修正理由

- 문맥오류 및 위원회 필수구성원 누락으로 일부 자구수정

2. 修正主要骨子

- 제19조의 2(구성)
 - 제1항 "위원회의 위원은"을 "위원회는 위원장과"로 하고
 - 제3항 "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"를 "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"로 자구 수정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	안	수	정	안
제19조의2(구성) ①위원회의 위원은, 부위원장 각 1인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	제19조의2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		
② (생략)		② (원안과 같음)		
③위원은 시의 관계 실·과장과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중 <u>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		③.....		 <u>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.</u>
④ (생략)		④ (원안과 같음)		
⑤ (생략)		⑤ (원안과 같음)		